

優秀 사슴 發掘 및 流通 活性化 對策

사슴 輸入開放으로 外國 사슴 輸入 推進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 사슴 분양을 기피하고 수입사슴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된 사슴이나 수입될 사슴들이 수출국에서 종족이나 우수사슴(녹용 생산용)으로 기른 것이 아니고 녹용생산을 목적으로 개발된 일반 사슴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혈통을 증명할 혈통서 없는 상업성(저질) 사슴 수입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본회는 품종개량과 녹용 생산성을 높이고 상업성 사슴수입을 저지하는 한편 국내 사슴의 유통활성화 대책으로 우수사슴 발굴규정, 사슴유통준칙, 지정분양장 규칙을 제정했으므로 모든 양목인의 참여와 활용을 바라는 바입니다.

1. 種鹿發掘

92년부터 사슴 輸入, 自由化에 따라 外國의 低質 사슴 輸入을 豫防하며 國內사슴의 質的向上을 期하기 위한 國內外 優良 사슴을 發掘하여 이를 改良 增殖하기 위해 種鹿制度를 導入實施하고자 하나 現行 畜產法에 種鹿 關聯規定이 없기 때문에 法律的 補完이 마련될 때까지 本會 自體 優秀 사슴 規程을 마련한다.



優秀사슴規程

第1條(目的) 이 規定은 사슴의 改良 增殖을 통해 鹿茸의 質을 높이고 量을 늘

이기 위하여 優秀사슴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對象 品種) 對象 品種은 國內에서 飼育하는 꽃사슴(花鹿), 레드디어(赤

鹿), 엘크(大鹿) 사슴과 外來 사슴 中 血統證明書가 있는 사슴을 對象으로 한다.

第3條(審査 期間) (1) 優秀사슴 審査는 每年 7 月에 實施하되 必要에 따라 變更할 수 있다.

(2) 協會長은 審査 60日前에 審査 期間, 場所, 其他 必要한 事項을 告示하여야 한다.

第4條(審査申請) 優秀사슴 審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別紙 1號書式)에 依한 優秀사슴 審査申請書를 韓國養鹿協會長에 提出하여야 한다.

但, 不得已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審査當日 提出할 수 있다.

第5條(審査員) 優秀사슴 審査員은 韓國養鹿協會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中에서 任命 또는 委囑한다.

1. 畜產職 公務員
2. 畜產團體의 技術職員
3. 養鹿專門 獸醫師
4. 畜產大學 教授
5. 養鹿에 關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

第6條(優秀사슴 審査基準) 畜產法 第4條의 規定에 依한 種畜審査基準과 同法第8條 2項의 規定에 依한 農林水產部 審査基準을 引用한 優秀사슴 審査基準(別紙)을 適用한다.

第7條(優秀사슴의 登錄) (1) 優秀사슴 登錄은 優秀사슴 證明書(別紙 2號書式) 또는 血統證明書を 첨부한 優秀사슴 登錄申請書(別紙 4號 書式)를 韓國養鹿協會에 提出하여야 하며 同協會는 優秀사슴 登錄

證(別紙 5號書式)을 交付한다.

(2) 優秀사슴의 登錄과 管理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韓國養鹿協會에서 定하여 이를 告示한다.

(3) 優秀사슴의 人工受精用 精液을 採取 處理하여 供給하는 者는 當該 精液을 提共한 優秀사슴의 血統에 關하여서는 確認을 받아야 한다.

(4) 韓國養鹿協會는 本規定에 依하여 登錄한 者로부터 所定의 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

第8條(優秀사슴의 審査) (1) 審査對像은 優秀사슴 審査 申請한 것에 限한다.

(2) 優秀사슴의 審査는 一般檢定과 能力檢定으로 區分하여 實施한다.

(3) 審査에 合格한 優秀사슴은(別紙 2號書式)의 優秀사슴 證明書を 交付하며 優秀사슴 證明書의 有效 期間은 1年으로 한다.

(4) 優秀사슴 審査에 必要한 經費는 申請人의 負擔으로 한다.

(5) 優秀사슴에 合格한 사슴과 優秀사슴으로 配付하는 사슴에 대하여서는 (別紙 3號書式)에 依한 優秀사슴 標識을 귀에 붙이게 한다.

第9條(優秀사슴의 告示) 韓國養鹿協會는 優秀사슴의 登錄 또는 登錄을 取消할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10條(定期實態調査) 韓國養鹿協會는 每年 1回 優秀사슴 및 施設 現況等 그 實態를 調査하고 그 結果를 處理하여야 한다.

第11條(施行) 본 規程은 理事會 議決後
農林水産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施行한다.

(제1호 서식)

심사신청서					
(1) 명 칭		(2) 생년월일			
(3) 종 류		(4) 특 징			
(5) 모 색		(6) 산 지			
(7) 혈통	부	조부	조모		
	모	조부	조모		
위의 가축에 대하여 우수사슴 규정 제7조 1항에 의한 우수사슴 검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사단법인 한국양육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심사준비 기록카드 또는 혈통증명서, 기타 증빙자료					

(제2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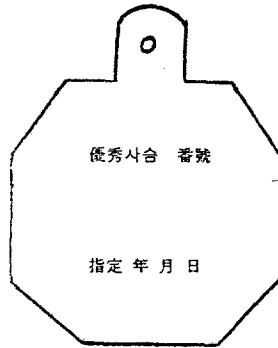
우 수 사 슴 증 명 서

제 호

명 칭					
종류및품종					
모 색					
특 징					
산 지					
혈	부	조부			
		조모			
통	모	조부			
		조모			
등 급					
위의 가축은 우수사슴규정 제7조 1항에 의한 우수사슴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사단법인 한국양육협회장 (인)					

(제3호 서식)

우 수 사 슴 표 식



팔각형 표식

재 료 : 스테인레스철

기 장 : 6cm

두 개 : 0.3cm

넓 이 : 4cm

혈(穴) : 0.3cm

(제4호 서식)

우 수 사 슴 등 록 신 청 서

경 영 자	(1)성 명	(한자)
	(2)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3)주 소	
(4)소 재 지		
(5)업 체 명		
(6)사 업 명		
(7)축 종		
(8) 사 육 두 수		
(9)대 지 면 적		m ²
(10)총 건 평		동 m ²
(11)축 사 면 적		동 m ²
(12)부 속 건 물		동 m ²
(13)사료포초지등 기 타 시 설		
우수사슴 규정 제7조 1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우수사슴의 등록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단법인 한국양육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 우수사슴 증명서 사본 1통		수수료 : 원

(별지 제5호 서식)

계 호	
우수사슴등록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사 진 3cm×4cm</div>	
대표자성명:	주빈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소 재 지:	
축 종:	
규 모:	두(수) 동 m
등록조건:	
우수사슴 규정 제7조 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우수사슴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한국양록협회장 (인)	

優秀 사슴 審査 施行 規則

第1條(審査對象) 國內에서 飼育하는 優秀 候補 사슴 및 外來 優秀사슴(血統書 있는 사슴)과 관련 民願事項(品質, 年齡, 妊娠)을 對象으로 한다.

第2條(審査準備) 優秀사슴 審査를 받고저 하는 사슴 飼育者는 飼育하는 사슴中 優秀하다고 自認하는 사슴에 한하여 審査에

必要한 記錄카드를 備置하고 다음의 審査 準備를 해야 한다.

1. 優秀사슴이 出產한 子鹿의 父母의 血統 出生年月日 生時體重等を 記錄카드에 記錄하고 出生년도와 固有番號를 明示한 耳標를 달아야 한다.
2. 出生後 18個月令의 體重과 初發情 및 妊娠과 牡鹿은 年度別 鹿茸 生産量을 記錄해야 한다.
3. 審査對象 사슴이 36個月令이 되면 審査 準備 記錄카드를 添附하여 優秀사슴 審査 申請書를 韓國養鹿協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3條(審査) (1) 優秀사슴 審査 申請書를 接受한 韓國養鹿協會長은 申請書에 審査日字를 通報하고 審査員으로 하여금 審査를 하게 한다.

(2) 審査는 優秀사슴 規程 第5條에 依해 選任된 審査員이 審査한다.

(3) 審査要領은 審査員으로 構成하는 審査 委員會에서 定한다.

學界 및 專門職 人士: 種畜專功 教授 1名, 種畜改良協會 幹部 1名, 畜産試驗場 幹部 1名

養鹿業界 人士: 사슴 專門 獸醫師 1名, 協會任員 1名, 協會研究委員 1名 協會流通委員 1名.

優秀사슴 審査 基準

本 基準은 農林水産部에서 告示한 種畜의 檢定 基準을 引用한 優秀사슴 審査基準이며 外貌 審査와 能力審査로 區分한다.

1. 外貌 審査 基準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사슴

年 齡 : 36個月

부 위	기 준 설 명						배 점				
							수	암			
1. 일반외모							30	30			
특 징	체격 및 모색						16	16			
	구분	꽃 사 슴		레 드 디 어		엘 크					
		수	암	수	암	수			암		
	체 장	130cm	120cm	190cm	160cm	230cm			210cm		
	체 고	90cm	84cm	130cm	110cm	140cm			130cm		
	체 중	90kg	80kg	250kg	180kg	350kg			300kg		
	미 장	15cm	15cm	18cm	18cm	15.5cm			15cm		
모 색	적황색 및 다갈색		적갈색		회갈색						
자 질	피부는 두껍고 부드러우며, 탄력이 풍부하고 피하에 여유가 많은 것 피모는 가늘고 부드러우며, 밀생하고 윤택이 있는 것						8	8			
균 형 및 체 격	머리, 목, 체구 및 사지가 서로 균형이 잡혀있고 각부위의 이행이 좋 으며 등이 수평으로 곧은것 발육이 좋고 살이 전신에 고루져 있으며 체폭이 넓고 깊으며 늘씬하 고 체격이 큰 것						10	10			
품위와성질	성별에 따라 뚜렷한 성장을 나타내며 체구는 야무지고 윤곽이 선명 하여 품위가 있어 성질이 명랑하고 동작이 활발한 것						4	4			
2. 머리, 목							15	8			
머 리	얼굴 길이가 이고 윤곽이 선명하고 이마는 평평하고 넓으 며 눈은 크고 정기가 있으며 영리한 것 뺨은 오목하고 고으며 아래턱이 튼튼하고 넓으며 콧날은 똑 바르고 콧구멍이 크며 입도 큰것. 귀는 넓고 크며 곧게 선것						5	5			
뺨	각좌가 크고 단단하며 뺨은 하단보다 상단이 굵으며 반원형으로 뺨 어야 하고 통통하고 윤기가 있는 것						7				

부 위	기 준 설 명	배 점	
		수	압
목	알맞은 길이와 두께를 가지고 앞뒤 이행이 좋으며 여유가 있는 것 목 갈키는 길며 암사슴은 턱느러미가 작고 숫사슴은 목이 굵고 늘씬한 것	3	3
3. 전 구		10	10
기 갑, 어깨	기갑은 알맞게 두껍고 견단이 너무 들출 않고 어깨길이가 중 정도이며 경사가 알맞으며 부착이 단단하고 살의 탄력이 있는 것	6	6
가 슴	앞이 넓고 깊으며 앞가슴과 겨드랑이는 충실하고 가슴바닥은 넓고 평평하면서 긴 것	4	4
4. 중 구		10	10
갈 비, 배	갈비뼈는 길고 넓게 잘 개장되어 있으며 늑간이 넓어 큰 흉강을 만든 것 배는 통이 크고 단단하며 하검이 충실한 것	6	6
등, 허리	평직하고 넓으며 등과 허리가 너무길지 않으면서 후구로의 이행이 평활한 것	4	4
5. 후 구		25	32
십 자 부	십자부는 평활하고 요각과 좌골이 돌출하지 않고 요각폭이 넓은 것	3	4
요 각	길고 넓고 살집이 놓으며 경사지지 않고 평평한 것	6	6
둔 부	곤부는 폭이 넓고 그 위치가 아래로 처지지 않는 것 좌골간이 넓고 요각에 비하여 조금 얇게 위치하고 좌골단이 돌출 않은 것	4	4
넓 적 다리	전반적으로 넓고 길고 두꺼우며 살이 단단한 것	4	4
유 기	사유구가 고루 크고 조적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으며 유두가 크고 배치가 잘되어 있으며 유정맥이 굵고 긴 것		6
생 식 기	암사슴의 생식기는 정상이고 숫사슴의 고환은 좌우가 고루 발달된 것	5	5
꼬 리	꼬리는 cm 정도로 알맞고 잘부착 해 있고 미추골은 크지 않는 것	3	3
6. 사 지		10	10
사지, 발굽	다리의 길이가 체구에 알맞고 지세가 바르며 근건과 관절이 발달하고 단단하며 건조하고 미끈한 것 관부는 너무길지 않고 계부와 비절은 넓고 튼튼한 것 발굽은 둥그랗고 모양이 좋고 뒤꿈치가 두터운 것	6	6
모 양	보폭은 넓고 발디딤이 확실하며 똑바로 전진하고 걸을 때 허리나 비절의 움직임이 안정된 것	4	4
계		100	100

실격조건

1. 전신이 혼잡모 또는 부분 이색모
2. 불임축
3. 감정 50% 이상 부위의 것
4. 부정행위
5. 유전적 불량 형질

2. 優秀사슴 能力 審査 基準

年齡：36個月令

區 分	性 別	配 點	꽃 사슴			레 드 디 어			엘 크			備 考
			A	B	C	A	B	C	A	B	C	
屠 體 率 %	♂	20	50 以上	45 以上	40 以上	50 以上	45 以上	40 以上	55 以上	50 以上	45 以上	
"	♀	50	60 以上	55 以上	50 以上	55 以上	50 以上	45 以上	55 以上	50 以上	45 以上	
鹿 茸 生 產 量 kg	♂	60	0.8	0.7	0.6	3	2.5	2	9	8	7	꽃60日生長 레70日生長 엘80日生長
緊 殖 間 隔 日 數	♀	20	344 以下	350 以下	360 以下	350 以下	345 以下	340 以下	350 以下	345 以下	340 以下	
18 個 月 (適 齡) 體 重 kg	♂	10	75	70	65	150	145	140	220	210	200	
"	♀	20	70	65	60	130	125	120	190	180	170	
生 時 體 重 kg	♂	10	3	2.7	2.5	7	6	5	13	12	11	
"	♀	10	2.5	2.3	2.0	6	5	4	10	9	8	
計 (암수별)		100										

2. 사슴 분양 지원

양록 초기에는 사슴의 희귀성과 부유층의 소유욕 때문에 예약 판매가 성행했으나 1990년이후 10만두의 사슴에서 25%식 증식될 뿐 아니라 금년부터 외국사슴이 수입되고 있어 사슴 분양 문제는 양록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대 문제이므로 본회는 사슴 분양지원과 공정거래 정착을 실현하고자 사슴 분양장 지정 및 관리규칙을 정한다.

사슴분양장 지정 및 관리규칙

제 1 조(자격) 사슴분양장을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은 본회회원(특별회원제외)으로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품종별 우량 성록 보유수와 자록분양 예정두수는 아래와 같다.

구 분	꽃 사 슴		레 드 디 어		엘 크		비 고
	수	암	수	암	수	암	
성록보유두수	10두이상	30두이상	5두이상	15두이상	3두이상	10두이상	상시 보유 해야함
자록분양두수	20두 이상		10두 이상		6두이상		매년 분양 해야함

(2) 1항의 기준중 두품종이상 혼합 사육 농장인 경우 품종별 기준의 3분의 2이상의 보유 품종만 지정한다.

(3) 1, 2호 대상자중 분양장 규칙 준수를 서약한 자

제 2 조(신청) 제1조 대상농장을 경영하는 자로서 본회 소정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한 후 본회 임원 2명이상 또는 관할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사슴분양장 지정 신청서(서식1호)를 협회장에 제출한다.



제 3 조(지정) (1) 협회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확인후 지정서(서식2호)를 교부한다

(2) 분양장 지정을 받은 양육장은(서식3호)의 농장안내 표식판(도로변)과 지정 분양장 간판(농장)을 설치하고 본회 발행 분양장 지정서와 준수사항(서식5호), 시세표(서식4호)를 게시해야 한다.

제 4 조(분양장 홍보) (1) 지정분양장에 대한 홍보는 년1회 회보에 칼라광고 및 분양장 명단을 매회 홍보한다.

(2) 지정 분양장의 사슴 분양 신문광고는 7월과 9월 2회 전문지에 게재한다.

(3) 지정 분양장 홍보비(분양장 광고, 사슴분양광고)는 농장당 년 30만원으로 정하며 매년도말까지 납입해야 한다.

제 5 조(관리) (1) 지정 분양장은 매년 7월말까지 분양계획서(서식6호)를 제출해야 한다.

(2) 협회장은 매년 9월말 지정 분양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 6 조(지정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정농장은 지정을 취소한다.

(1) 보유기준 두수 미달 및 분양두수 미달일때

(2) 영리목적으로 외부 사슴을 상습적으로 구매 분양한 때

(3) 자육분양 및 성록 판매시 품종년령, 임신 가부를 속이거나 중대한 결함을

숨겨 매수인에 피해를 주거나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행위를 한 때

(4) 협회가 발표한 기준시세에 상당한 이유없이 폭리를 취했을 때

(5) 지정 분양장의 당해년도 홍보비를 체납했을 때

(6) 지정 분양장의 분양계획서를 제출치 않을 때(매년 7월말)

제 7 조(분양가격) 자육분양 및 성록판매 가격은 본회 발표시세(수시)를 기준하여 당해 물건에 따라 쌍방향의 결정한다.

제 8 조(특전) 지정 분양장에 대한 지원 실태는 다음과 같다.

(1) 우량사슴 입식 및 홍보지원

(2)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순위 부여

(3) 각급 행정 지도와 홍보 및 유통정보의 우선지원

제 9 조(경과조치) 본 규칙제정 이전에

지정한 분양장 중 본 규칙 제1조의 기준 두수 미달 또는 1991년도 홍보비 미

납 분양장은 1992년 7월말까지 기준두수 확보 및 분양 계획서 제출과 홍보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기간내 이행을 하지 않는 분양장은 지정을 취소한다.

제 10 조(시행) 본 규칙은 1992년 6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호

분류번호	사슴분양장신청서		심	지 회 장	사무국장	회 장	
			사				
목장소재지			목	장	명		
대표자주소			전	화	목		
대표자명	한문:		주민등록번호				
사슴보유현황및분양두수							
사슴명	성	보 유 사 슴 수					분 양 비 고 (월동)
		당년생	2세	3세	4~9세	10세이상	
꽃사슴	수						
	암						
레드디어	수						
	암						
엘 크	수						
	암						
레드교잡종	수						
	암						
본인은 사슴분양장 지정 및 관리규칙을 준수하고 공정거래를 통한 양목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슴분양장 지정 신청을 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인: (인)							
사단 한국양목협회장 귀하 법인							

서식2호

第 號

사슴 분讓場 指定書

牧場名

代 表

위의 牧場은 本會 사슴 分讓場 指定 및 管理 規則에 依據 사슴 分讓支援과 流通秩序確立을 위하여 사슴 分讓場으로 指定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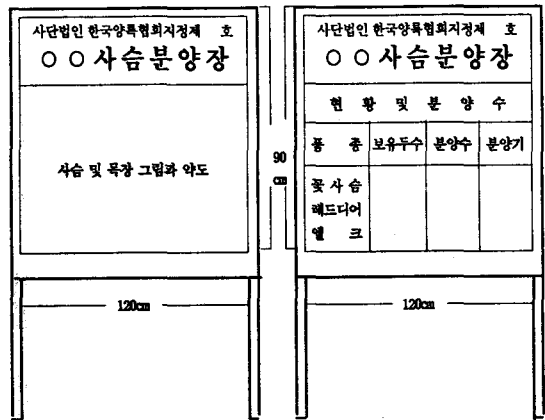
199 년 월 일

社團 韓 國 養 鹿 協 會
 法人 會 長

서식3호 표식판

A. 안내 표식판(국도변)

B. 목장 간판(목장입구)



서식4호

199 . 월 현 농장 분양 사슴시세(전국평균)

단위 : 두/만원

사슴명	성	당년생	전년생		3세		4세 이상		비 고
		하-상	평균	하-상	평균	하-상	평균	하-상	
꽃 사슴	수								
	암								
꽃 사슴 교잡종 (레+꽃)	수								
	암								
레드디어	수								
	암								
레드디어 교잡종 (엘+레)	수								
	암								
엘 크	수								
	암								

서식5호

분양장 준수사항

지정 분양장은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사슴 보유두수는 지정당시의 보유수 이상 확보해야 함.

보유 사슴수(성별)

사슴수	숫사슴	암사슴	합계	년분양수	비고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 2. 매년 7월까지 당해년도 분양예상수를 협회에 보고함.
- 3. 분양가는 협회가 조사발표하는 시세를 준용하되 매매 쌍방향의 결정함.
- 4. 분양은 자유분양을 원칙으로 하며 협회 또는 지회가 의뢰하는 것을 우선 분양함.
- 5. 사슴의 분양시 성별, 연령, 임신 기타 허위 또는 왜곡된 매매행위는 엄금함.
- 6. 목장의 폐업, 전입 또는 기준 두수 미달시와 본 준칙을 이행치 않을 시는 분양장지정을 취소함.

19 년 월 일

사단법인 **한국양록협회**
법인

서식6호

사슴 분양 계획서

목장소재지					분양장명	
대표자주소					전화	목자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육두수및분양두수						단위: 두
사슴명	성별	보유두수		분양예정두수		특기사항
		자목	육성목	성목	자목	
꽃사슴	수					
	암					
레드디어	수					
	암					
엘크	수					
	암					
레드교잡	수					
	암					
<p>첨부물: 광고자료 및 광고비 별첨함.</p> <p>본인은 협회의 사슴 분양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거래를 통한 양록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년 사슴 분양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 사슴분양장</p> <p style="text-align: center;">대표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사단법인 한국양록협회장 귀하</p>						

3. 공정거래

사슴은 사육장에서 분양을 받아야 하는 특성에 따라 분양 희망자는 농장을 찾아 다녀야 하는 불편 때문에 사슴 중상인을 통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비리를 예방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통준칙을 마련한다.

사슴流通準則

第1條(目的) 사슴 去來에 隨伴되는 品種, 性別, 年令等 사슴의 體刑과 妊娠, 疾病, 鹿茸生産量等 사슴의 能力과 價格, 手數料 및 運搬等에 關한 是非를 豫防하여 公正去來 風土造成으로 流通秩序確立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品種) 國內에서 飼育(動物園 除外)하는 사슴 品種은 花鹿, 赤鹿, 大鹿, 水鹿과 레드 交雜種 및 꽃사슴 交雜種으로 區分한다.

(1) 花鹿이라 함은 北韓, 台灣, 日本 等地에서 輸入한 다른 血統의 混合飼育으로 血統 保全없이 交接되어 花鹿이라 稱한다. 但, 사슴 個體에 따른 差는 認定한다.

(2) 赤鹿이라 함은 뉴질랜드와 캐나다 레드디어를 輸入해서 混育했으므로 血統 區分할 수 없어 赤鹿이라 稱한다.

(3) 大鹿(엘크)이라 함은 美洲에서 輸入

한 엘크의 單一種으로 大鹿이라 稱한다.

(4) 레드 交雜種이라 함은 赤鹿(牝), 大鹿(牡)의 交配種으로 交配代數와 關係없이 레드 交雜種이라 稱한다. 但, 改良程度에 따른 差는 認定한다.

(5) 꽃사슴 交雜種이라 함은 花鹿(牝)과 赤鹿(牡)의 交配種으로 交配代數와 關係없이 꽃사슴 交雜種이라 稱한다. 但, 個體에 따른 差는 認定한다.

(6) 레드 交雜種 및 꽃사슴 交雜種은 改良程度에 關係없이 레드 交雜種, 꽃사슴 交雜種이라 呼稱한다.

第3條(賣買者, 仲介人) 本準則에서 賣者라 함은 사슴을 파는 牧場主와 사슴을 轉賣한 仲商人을 指稱하며 買者라 함은 사슴을 사는 願買人(實需要者 또는 仲商人)을 말하고 仲介人이라 함은 去來를 斡族하는 職業紹介人(手數料를 받은 者)을 稱한다.

第4條(性別) 사슴의 性別은 性器 및 外形으로 識別하며 機能에 있어서 牝은 子鹿生産을 하고 牡는 鹿茸生産을 하는 것이 特徵이다.

第5條(年令) 사슴의 年令은 牝은 初産, 牡는 첫뿔(1本鹿)까지는 識別이 可能하나 正確한 年令은 專門人의 鑑別을 要한다. 去來에 있어서의 年令은 사슴 生産 農場主의 正確한 證言 또는 生産年度를 明示한 耳標로 立證할 수 있다. 特히 賣者 또는 仲介人은 年令을 속여서

는 안되며, 이 境遇 이로 因한 損害는 賣者가 負擔해야 한다.

第6條(妊娠) (1) 成牝鹿의 妊娠을 保障 또는 前提로 賣買한 사슴이 不妊일 경우 賣者는 該當損害를 辨償해야 한다.

(2) 賣買를 成事하기 위해 妊娠을 前提로 紹介한 仲介人은 賣者와 共同責任을 진다.

(3) 買入한 牝鹿이 流産 또는 死産의 경우는 買受人의 責任으로 한다.

第7條(不妊牝鹿) 不妊牝鹿 또는 隔妊牝鹿의 事實을 숨기고 賣買했을 때는 賣者는 當害 損害를 辨償하거나 買主의 可妊牝鹿 交換 要求에 應해야 한다.

第8條(不良鹿) 사슴의 痼疾적인 持病 또는 異狀體刑等を 賣者가 故意로 숨기고 판매 했을 때는 販賣를 無效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賣買 과정에서의 損害(仲介料, 運搬費)는 賣者의 責任으로 한다.

第9條(賣買價) 사슴의 價格은 社團法人 韓國養鹿協會가 調査發表하는 時勢를 基準으로 하여 賣物 사슴의 個體와 能力에 따라 賣買 當事者 合意로 決定한다.

第10條(仲介料) (1) 사슴의 販賣는 農場 訪問 去來가 大部分이므로 他家畜의 仲介料率보다 높은 算定이 不可避하여 다음과 같이 品種別, 年令別(子, 成)과 單頭, 多頭別로 定한다.

單位：頭/%

年令別	꽃 사슴			레드디어			엘 크			비 고
	頭	2-5頭	6頭以上	頭	2-5頭	6頭以上	頭	2-5頭	6-10頭	
子 鹿	10%	7%	5%	8%	6%	4%	4%	3%	2%	11頭以上은 販賣 者와 仲介人 協 議 決定
成 鹿	8%	6%	4%	7%	5%	3%	3%	2%	1.5%	

(2) 1項은 仲介料率은 모든 사슴 去來에 準用하며, 賣買者間 分割 負擔한다.

(3) 1項의 料率은 사슴 販賣價에 對한 仲介料 比率이며, 但, 賣買者와 仲介人 이 合意한 경우는 例外로 한다.

第 11 條(사슴의 引渡) 販賣된 사슴은 賣渡入 農場에서 賣買 當事者 및 仲介人 이 賣物을 確認後 引渡하며 上車 完了 時까지는 賣渡人이 運搬(운임포함)은 買受人의 責任으로 한다.

第 12 條(運搬) 사슴 運搬 課程에서 發生한 事故(箱子不良, 車輛故障 및 事故, 사슴분 실, 交替)는 運送人의 責任으로 한다.

第 13 條(適用의 範圍) 本 規則은 分讓場 을 비롯한 全國의 모든 養鹿場과 本會 의 流通委員 및 流通에 從事하는 仲介 人의 사슴 去來 行爲에 準用한다.

第 14 條(慣例) 本 準則에 未備된 事項은 慣例에 依한다.

第 15 條(改正) 本 準則의 改正은 流通委 員會의 改正 建議와 이사회 決意로 決 定한다.

第 16 條(施行) 本 準則은 理事會에서 議 決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

1992. 6. 19

회비 납입 안내

1992년도 회원의 년회비 납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아호니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회비구분	금 액	품 종 별 사육 범위			비 고
		꽃 사슴	레드디어	엘 크	
영세형	30,000원	10두 이하	-	-	혼합사육사는 품종별 비비 율로 환산함.
부업형	50,000원	11 - 50두	20두 이하	10두 이하	
전업형	100,000원	51두 이상	21두 이상	11두 이상	
임 원	100,000원	이사, 감사, 고문, 지도위원, 유통위원			

1. 납부처 : 지방은 관할지회에서 임원과 지회가 없는 지역은 협회로 직납함.

우체국 은. 라인 013383-0020812 안 정 식